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8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한기호 · 안철수 · 윤한홍
안상훈 · 조배숙 · 강명구
유용원 · 김미애 · 배준영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안 제15조).
- 나.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와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유족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와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	--